

1.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안 제4조)

- 시행령에서 범죄경력자료 조회신청서 및 회신서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안 제5조)

-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

다. 공장설립 계획의 변경신고 사항 (안 제7조)

- 법에 공장설립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등

라.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안 제8조)

- 법에 공장설립을 완료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완료신고기간을 규정하도록 위임, 완료 신고기간을 2개월로 규정

마.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안 제10조)

-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을 운영중이나 법령상 지정 신청 관련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규칙에 고시를 운용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전부개정안 전문 첨부

2) 입법예고(2022. 2. 11. ~ 3. 23.)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이 제출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2.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중소기업확인서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1서식(별지 제4호의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식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한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결과 제공 동의는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신청) 창업기업은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 20조에 따라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 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 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제7조(공장설립 계획의 변경)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장설립 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의 완료신고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9조(공장설립 계획의 사전협의 신청)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계획의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설립 계획 사전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 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한다)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명세서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3. 법 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4. 제10조 각 호의 사항

5.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자금을 말한다)
5.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③중소기업상담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영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말한다.
-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신청) 영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결과보고서
2. 용역대금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축·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을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중소기업부장관(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진흥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2조제2항의 사업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휴·폐업사실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
5. 자동차운전면허증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국세)납세증명서
8. 지방세납부확인서
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0. 수출신고필증
11.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2. 디자인등록원부

13. 상표등록원부
14. 실용신안등록원부
15. 특허등록원부
16. 이노비즈확인서
17. 메인비즈확인서
18. 벤처기업확인서
19. 사회적기업인증서
20.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3. 중소기업확인서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개인/법인)	설립연월일		
	주소(법인은 소재지)			
	공장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

기 간	형태 (개인/법인)	상호명	업 종	직 위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민원인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1.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법인)	1.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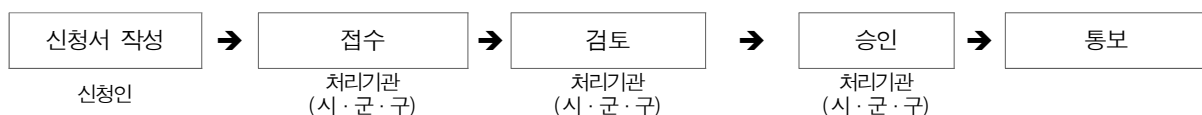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주업종				
	기업유형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법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코드(세세분류)				주생산물				
	항목명								
	기 창업이력 유무		[] 창업이력 없음		[] 창업이력 있음				
대표자 창업 이력정보	기업명	대표자	기업 유형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산업분류 코드	사업자상태	사업개시일	폐업일	비고
			☐ 개인 ☐ 법인			☐ 계속 ☐ 휴·폐업			
	* 대표자 창업이력정보는 창업이력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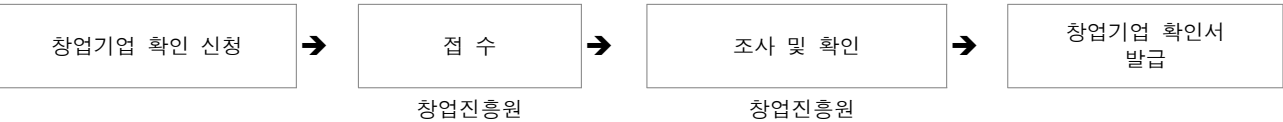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2.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중소기업확인서 4. 폐업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발급번호: 제 호

창업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초기창업기업 기간: . .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라 위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기관명		
대상자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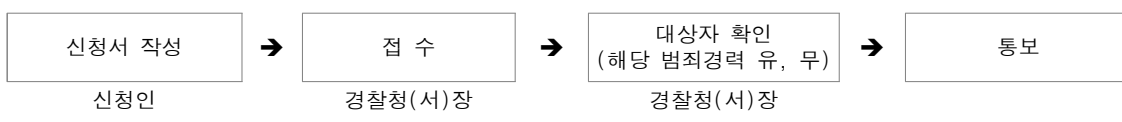
경찰청(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사본 등)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등)		

본인은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성실경영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 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의 경우만 작성)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		[] 있음 [] 없음
산업재산권 범죄		[] 있음 [] 없음
식품·보건범죄		[] 있음 [] 없음
환경범죄		[] 있음 [] 없음
컴퓨터(사이버)범죄		[] 있음 [] 없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죄		[] 있음 [] 없음

조회결과

연번	작성일자 작성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청(서)장

직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가.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

-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제357조의 죄(미수범 포함)
- (2) 「형법」 제207조부터 제213조까지의 죄
- (3) 「형법」 제214조에서 제217조까지의 죄
- (4) 「형법」 제315의 죄
- (5) 「관세법」 위반
- (6)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 (7) 「대외무역법」 위반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1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11) 「상법」 위반
-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15) 「조세범처벌법」 위반
- (16)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죄
-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산업재산권 범죄

- (1) 「디자인보호법」 위반
- (2) 「상표법」 위반
- (3) 「실용신안법」 위반
- (4) 「저작권법」 위반
- (5) 「특허법」 위반

다. 식품·보건범죄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5) 「식품산업진흥법」 위반
- (6) 「식품위생법」 위반
- (7)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8) 「축산물법」 위반
-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10) 「약사법」 위반
- (11) 「의료법」 위반

라. 환경범죄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 (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4) 「먹는물관리법」 위반
- (5) 「물환경보전법」 위반
-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7)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 (8) 「수도법」 위반
- (9)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 (11) 「지하수법」 위반
- (1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 (13) 「폐기물관리법」 위반

- (14) 「하수도법」 위반
- (15) 「하천법」 위반
- (16)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 컴퓨터(사이버)범죄

- (1) 「형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및 제144조의 죄
- (2) 「형법」 제227조의2, 제228조 제1항 및 제229조의 죄
- (3) 「형법」 제232조의2 및 제234조의 죄
- (4)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죄
- (5)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죄
- (6) 「형법」 제366조, 제368조 제2항 및 제369조 제1항의 죄
-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에서 제11호까지의 죄

바. 노동 관계 법령 위반죄

- (1) 「근로기준법」 위반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3) 「최저임금법」 위반
-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 (9) 「직업안정법」 위반
-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 (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 (12)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 (13) 「고용보험법」 위반
- (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7)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2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성실경영 평가 결과 제공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등)		

본인은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 결과의 관계 기관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성실경영 평가 결과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창업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실경영 평가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재창업지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 자료 제공 기관: 국세청,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장설립 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공장설립 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 ²) (건물: m ²)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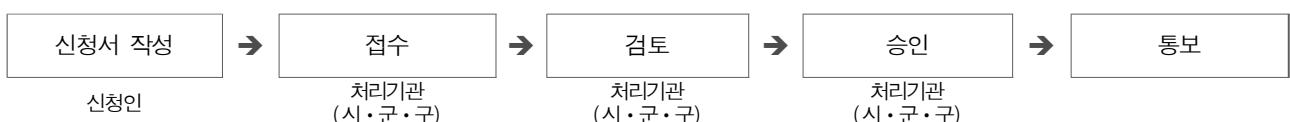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설립 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등록번호						
등록일		공장설립승인대장(갑)				
등 록 인	회 사 명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 장 개 요	공장소재지				지 목	
	설립승인번호		설립승인일			
	용 도 지 역		배출규모별 사업장	대 기	종	
				수 질	종	
	업종 (분류번호)		주요생산품			
	규 모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등록 조건						
사 용 내 역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사 용 면 적		업 종	가 동 개시일	가 동 상 태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210mm×297mm(보존용지 1종 70g/m²)

등록번호							
등록일		공장설립승인대장(을)					
회 사 개 요	회 사 명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 장 개 요	공장설립등 승 인 일			완료신고 (등록)일		가동개시일	
	공장부지면적(m²)		제조시설면적(m²)		부대시설면적(m²)		종 업 원 수
							남: 여:
	업 중 (분류번호)						보유구분
							☐ 자 가 ☐ 임 대
생 산 개 요	주요생산품			주 요 원 자 재			
	전력사용량(kW/일)		용수사용량(t/일)		연료사용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석유 (ℓ/일)	가스 (m³/일)	기타 (t/일)
제 조 시 설 내 역							
제 조 시 설 명		수 량		배 출 여 부			

210mm×297mm(보존용지 1종 70g/m²)

공장설립 계획 사전협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공장설립 계획	공장에정소재지	부지면적	m ²
	지목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생산물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인허가사항	☐ 건축 ☐ 농지전용 ☐ 산지전용 ☐ 토지형질변경 ☐ 주거목적외사용 ☐ 하천점용 ☐ 도로점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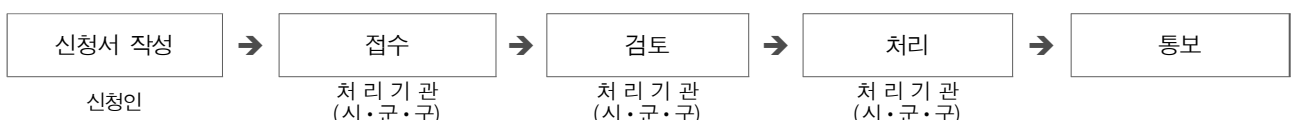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설립 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지정 []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전화번호
	주소	

창업보육 센터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관 유형
	규모	센터연면적 ()㎡ 창업보육실면적 ()㎡

변경사항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4. 시설명세서 1부 ※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중소기업상담회사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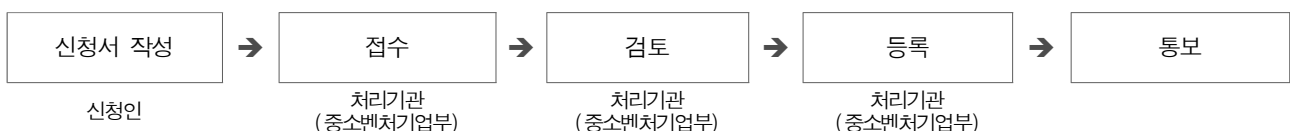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등록번호: 제 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

1. 상호 및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용역대금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	-----	------	-----

신청인	중소기업상담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신청액	용역대금총액
	창업자	전화번호
	주소	
	용역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용역결과보고서 1부 2. 용역대금계산서 1부 3. 용역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